산업통상자원부 http://www.motie.go.kr	보 도 자 료	대한민국 대전환 한국판뉴딜

2021년 3월 29일(월)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(인터넷, 방송, 통신은 3월 28일(일) 오전 11시 이후 보도 가능)

배포일시	2021. 3. 26.(금)	담당부서	재생에너지산업과
담당과장	윤성혁 과장(044-203-5370)	담 당 자	김창수 주무관(044-203-5376)

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 등 사업공고 및 접수 실시

- 20년 대비 25%(1,125억원) 증가한 총 5,610억원 지원 -
- 산단 태양광 지원 대상 확대, 도심 태양광 사업 신설 등을 통해 기존 건축물, 주차장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추진 -
- 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 확대를 위해 장기 저리 주민참여자금 지원 -

□ 산업통상자원부(장관 성윤모)는 **3.29(월) 2021년「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」**과 **「녹색혁신금융사업(주민참여자금)」**을 공고하고, **3.31(수) 부터 신청접수**를 받는다고 밝혔다.

○ **금융지원** 사업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와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체 대상 **발전시설 설치자금과 생산·운전자금**을 융자 지원하고,

- **주민참여 자금**은 **대규모 풍력·태양광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인근 주민들을 대상**으로 지원한다.

○ 사업규모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산 추세를 반영하여 **20년 대비 25%(1,125억원) 증가한 5,610억원**으로,

* **금융지원:** (20) 4,120 → (21) 5,240억원, **주민참여자금:** (20) 365 → (21) 370억원

- **장기저리 융자**지원을 통해 **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**와 **관련 산업을 육성**하고, **지역주민과 발전수익 공유**를 지원한다.

□ 21년 **신재생에너지금융지원 사업의 주요 지원대상**은 다음과 같다.

① 농촌 태양광 (3,205억원)

○ 농촌 태양광 사업은 설비용량 기준으로 **농·축산·어민 개인 당 500kW 미만, 조합의 경우 참여하는 농·축산·어민 1인당 500kW 미만**으로 **최대 300억원까지 태양광 설치비용을 융자지원(최대 90%)**한다.

○ 올해부터는 **참여자 수에 비례**하는 방식으로 **조합당 지원 용량***을 **상향조정**하였고, **농업용 저수지 태양광**을 지원대상에 추가하였다.

* (~19년) 개인 및 조합 모두 500kW 미만까지 지원 → (20년) 개인 500kW 미만, 조합 1.5MW 이하 → (21년) 조합 참여자 수 × 500kW 미만

< 농촌 태양광 주요내용 >

❶ 지원 대상
- **농촌형·영농형 태양광** : 농·축산·어업인이 본인 거주지의 읍·면·동 또는 인근 읍·면·동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 (영농형은 발전과 경작을 병행)
- **농업용 저수지 태양광** : 공공 소유 농업용 저수지 인근에 거주하는 지역주민 또는 협동조합이 해당 저수지 수면에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하는 사업

❷ 대출기간/이자율 : 5년 거치, 10년 분할상환 / 분기별 변동금리(1.75%)

❸ 융자지원 비율 : 개인 및 협동조합 90% 이내

② 산단 태양광 (1,500억원)

○ **산단** 또는 **개별입지 공장 지붕, 창고, 주차장 등 유후부지를 활용**하여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를 희망하는 **공장주**나 **임대 사업자**를 대상으로 **설치비용의 최대 90%까지 장기 저리**로 **융자 지원**하는 사업으로, 전년 예산(1,000억원)대비 50% 증액하여 **1,500억원 규모**로 **지원**한다.

○ 올해부터는 **태양광外에 연료전지, 태양열, 지열 등도 지원대상에 추가**하였고, 대상 부지도 **공장 지붕外에 주차장, 창고 등도 가능하도록 개편**하였다.

< 산단 및 공장 시설자금 주요내용 >

❶ **지원대상** : 산업단지 또는 개별입지 공장 부지 내에 태양광·태양열·지열·연료전지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설치하는 자(공장주, 임대사업자 모두 가능)

❷ **대출기간/이자율** : 5년 거치, 10년 분할상환 / 분기별 변동금리(1.75%)

❸ **융자지원 비율** :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 90%, 중견기업 70%

❹ **21년 주요 변경 사항**

구분	20년		21년	
	지원대상	에너지원	지원대상	에너지원
산업단지	산단 부지	태양광	산단 및 공장 부지	신재생에너지원
개별입지 공장	공장 지붕	태양광		

③ 도심 태양광 (신설, 200억원)

○ **'21년 신규사업**으로 주택, 상업건물, 교육시설 등 **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훼손하지 않고 활용**하는 도심 태양광 발전사업에 200억원 규모의 융자지원 예산이 편성되었다.

○ '21년에는 건축물대장으로 확인 가능한 **건축물 및 부속시설물, 주차장** 등을 대상으로 지원하며, 향후 철도·도로 등 **건축물 外 시설물까지 지원 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**할 계획이다.

< 도심 태양광 주요내용 >

❶ **지원대상** : 건축물 및 부속시설물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하는 자 (건물 소유주, 임대사업자 모두 가능)

❷ **대출기간/이자율** : 5년 거치, 10년 분할상환 / 분기별 변동금리(1.75%)

❸ **융자지원 비율** : 중소기업(개인사업자 포함) 90%, 중견기업 70%

④ 기타 지원 사업 (335억원)

○ 이외에도 풍력, 연료전지 등 기타 신재생에너지 시설, 신재생에너지 관련 제품 생산 중소기업의 생산·운전자금도 융자 지원하여 신재생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하고, 관련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.

□ 또한, **주민참여자금**도 **370억원 규모**로 **지원**한다.

○ **주민참여자금**은 대규모 풍력(3MW이상), 태양광(500kW이상) 발전소 인근 주민들이 발전 사업에 참여(채권, 지분, 펀드 등)하고자 할 때, **투자금(총사업비의 4%이내)의 최대 90%까지** 장기저리로 지원한다.

< 주민참여자금 주요내용 >

❶ **지원대상** : 태양광(500kW이상) 및 풍력 발전소(3MW이상) 주변 읍면동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 또는 주민으로 구성된 마을기업(5인 이상) 등

❷ **대출기간/이자율** : 20년 거치 일시상환 / 분기별 변동금리(1.75%)

❸ **융자지원액** : 총사업비의 4%(자기자본의 20%) 이내 금액의 최대 90%

□ 산업부는 본 사업을 통해 **기존 건축물 등 유휴부지를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설비를 지원**하여 **환경훼손을 최소화**하면서 **신재생에너지 보급을 확대**할 계획이며,

○ 대규모 풍력·태양광 프로젝트에 **인근 주민들이 참여**하고 **발전수익**을 **배분하여 상생**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.

□ 자세한 사업내용은 **3.29(월)부터 산업부 홈페이지**(www.motie.go.kr)에서 확인 가능하며,

○ **신청 희망인**은 **에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**(www.knrec.or.kr)를 통해 **3.31(수)부터 자금 소진시**까지 신청할 수 있다.

[첨부1] 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268호) 2021년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공고문

[첨부2] (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제2021-269호) 2021년 녹색혁신금융(주민참여자금) 지원사업 공고문

OPEN 공공누리 공공저작물 자유이용허락

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재생에너지산업과 김창수 주무관(☎ 044-203-5376)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.